메릴랜드 주 법안

형법 – 괴롭힘-리벤지 포르노

|  |
| --- |
| 형법 조항섹션 3-809메릴랜드 주 법령 주석 (2012정정, 2013보충) 에 추가. |

본 법안은 보편적 괴롭힘과 더불어 개인이 /고의적으로 /타인이 인터넷에의 이미지의 게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특정 이미지를 인터넷에 게재해 (1) 타인에게 감정적 고통을 유발하는 일을 방지하고 (2)본 법안을 어긴 이 에 대한 법적 처벌을 마련하며 (3)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3) 법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명하는 데 에 그 의의를 둔다.

상호 통신이 가능한 특정 컴퓨터 서비스는 타인에 의해 제공된 컨텐츠의 경우 본 법안의 실행에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 조항 3-809

(A)(1) 이 섹션에서 다음의 용어들은 서술된 대로 의 정의를 따른다.

 (2) “사적 부위”는 알몸, 알몸 상태의 성기. 여성의 유두, 엉덩이를 지칭한다

 (3)”성적 접촉”은 동성, 이성간의 행위를 막론하고 성기 대 성기, 구강 대 성기, 항문 대 성기, 구강 대 항문 간의 행위를 포함한 성행위를 지칭 한다.

(B)(1) 다음의 상황에서 이 섹션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합법적인 법집행 절차, 불법행위의 제보, 법의 속행 또는

(2) 상업적 환경 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자발적 노출

(2) 상호 통신이 가능한 특정 컴퓨터 서비스( 47 U.S.C 230(F)(2) 에 정의된 대로) 는 타인에 의해 제공된 컨텐츠의 경우 본 법안의 실행에 적용되지 않는다.

(C) 개인은 타인에게 감정적 고통을 유발할 목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1) 타인이 이미지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2) 타인이 이미지가 사적으로 보관될 것이라고 합리적인 기대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에 다음을 게재하면 아니된다

타인의 정체를 노출하거나 /타인의 사적 부위를 노출하거나/타인이 성적 행위를 하고있는 사진, 필름, 비디오 테입, 녹음물, 종류를 막론한 타인의 이미지의 복사본

(D) 본 섹션을 위반하는 이는 최대 2년의 징역형과 $5000의 벌금형, 혹은 둘 모두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경범죄 위반으로 분류된다.

본 법안은 2014년 10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띈다.